



지정인증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 제 호

2. 기 관 명:

3. 주 소:

4. 업무수행범위: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 년 월 일

행 정 안 전 부 장 관

직인